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 보 공 개 서

(주)케어마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25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 01. 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11. 20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주)케어마인

[대표 전화번호] : 02-2663-8830
[대표 팩스번호] : 02-2662-8821
[대표 이메일] : caremine119@naver.com

목 차

-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케어마인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6. 2.	2021. 7. 27.	김명식	02-2663-8830	02-2662-8821
	법인등록번호	110111-7906568	사업자등록번호	604-81-43872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명식 / (주)케어마인	케어마인 심리상담&코 칭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명식	02-2663-8830	02-2662-8821
사내이사	장미라 / (주)케어마인	케어마인 심리상담&코 칭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명식	02-2663-8830	02-2662-8821
사내이사	최동하 / (주)케어마인	케어마인 심리상담&코 칭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명식	02-2663-8830	02-2662-8821
감 사	CHANG CHING YI (장청이) / (주)케어마인	케어마인 심리상담&코 칭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명식	02-2663-8830	02-2662-8821
계열회사	김명식 / (주)야베스코리 아	몬스터스시& 사시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6호 (마곡동)		
		더바디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명식	02-2662-8820	02-2662-882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김명식 / (주)엠에스케이	뉴핏샵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5호 (마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명식	02-2662-8820	02-2662-8821
계열회사 (사내이사)	CHANG CHING YI (장청이) / (주)야베스코리아	몬스터스시& 사시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6호 (마곡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더바디스	김명식	02-2662-8820	02-2662-882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엠에스케이	케어마인 심리상담& 코칭센터	2021. 12.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5호	김명식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케어마인	심리상담 & 코칭 센터 (counseling & coaching center)
상 호	케어마인 심리상담 & 코칭 센터 000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017664400000 호 (2021.8.20)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 제 4020210082291 호 (2021.4.21)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9,872	260,268	-80,395	18,501	-111,542	-111,395
2022년	237,012	410,073	-173,060	247,687	-98,714	-92,665
2023년	232,360	393,584	-161,223	291,963	-5,635	11,83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명식	대표이사	2021.06.02~현재	대표이사	업무 총괄
	장미라	이사	2021.06.02~현재	이사	업무 집행
	최동하	이사	2021.06.02~현재	이사	업무 집행
	장청이	감사	2021.06.02~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주)야베스코리아/ 몬스터스시&사시미	가맹사업 경영	2020.03.02~ 현재	몬스터스시&사시미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계열회사	(주)야베스코리아/ 더바디스	가맹사업 경영	2021.05.20~ 현재	더바디스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계열회사	(주)엠에스케이/ 뉴풋샵	가맹사업 경영	2020.11.04~ 현재	뉴풋샵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영업장 사용	출원 2020. 3. 11. 등록 2021. 8. 20.	출원번호 제4020200040303호 등록번호 제4017664400000호	(주)엠에스케이	2031년 8월 20일 (2031년 8월 20일)
 (상표권)	영업장 사용	출원 2021. 4. 21. 등록 --	출원번호 제4020210082291호 등록번호 --	(주)엠에스케이	(2031년 8월 20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 등록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사업 현황

1.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날 : 2021년 10월 1일)

2.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엠에스케이	케어마인 심리상담& 코칭센터	김명식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5호 (마곡동)
(주)케어마인	케어마인 심리상담& 코칭센터	김명식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층 404호 (마곡동)

3.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심리상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1		1	1		1
서울	1		1	1		1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야베스코 리아	몬스터스시 &사시미	20190566	일식	3/0	0/0	0/0
가맹본부	(주)야베스코 리아	더바디스	20213547	기타서 비스	2/0	0/0	0/0
가맹본부	(주)엠에스 케이	뉴풋샵	20201828	기타서 비스	0/0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해당없음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해당없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의 바로전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비공개)	13,709	13,709	-	-
광고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마곡역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02-2667-418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케어마인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및 기타옵션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8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입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개점 전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광고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비용	가맹본부에 인테리어업체의 알선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		
간 판	해당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장비, 물자 및 사무비품류	해당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홍보용 인쇄물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46,200				
가입비	33,000	계약 체결 후	반환 안됨	가맹점 관리비, 가맹점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 KNOW-HOW 운영 지도 등	귀책사유 없는 해지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7,700	계약 체결 후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오픈전 가맹계약 해지시 반환
광고 보증금	5,500	계약 체결 후	반환 안됨	광고시 미반납	귀책사유 없는 해지시 정산 후 반환

① 가맹비 대가 내역 : 가입비 50%, 영업표지 사용대가 30%, 개점컨설팅 20%.

② 가입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10,000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보증보험 대체가능)	계약 체결 후	당사 제공물품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계약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보증보험증서는 증서의 효력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56,200	
가입비	33,000	부가세 포함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개점 전 교육비	7,700	부가세 포함
광고 보증금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부가세 없음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4) 귀하가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시설,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 고
총계		130,500	2,610		전용 165㎡ (약50평)기준
인테리어	(요청시) 가맹본부	104,500	2,090	선금 및 제작 완료 후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간 판	(요청시) 가맹본부	2,200	-	제작 완료 후	
장비, 물자 및 사무비품류	(요청시) 가맹본부	19,800	396	주문과 동시	
홍보용 인쇄물	가맹본부	4,000	-	주문과 동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 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에 설계도를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필수 구입 내역 :
장비 및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개설, TV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가맹희망자 입지 도출 -> 선정 사업장 방문 -> 입지 및 상권분석 ->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 ->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 -> 선정 사업장 방문 -> 입지 선정 조언 ->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시 최종 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입지선정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직원채용의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채용사이트와 전문가를 통해 채용을 지원하며, 필요시 필수인원(정규직 상담사, 행정실장)에 대한 채용면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정착물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영업개시 이전에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 계약시 별도 협의 할 경우 결재의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월매출의 3.3%	익월 7일	반환 않됨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계약조건에	분담금 통지를 받은 날 로 부터 3일 이내	반환 않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계약조건에 따라 균등 부담

		따라 변동됨)				
가맹점 모집		가맹본부 전액부담				가맹본부 부담
교육 훈련비		가맹사업자 전액부담				당사부담 (예외있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 기일 경과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4] 페이지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 :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센터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상품 취급 여부, 서비스 품목의 운영상태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회계관리	공급 물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프로그램 등 감독		

[가맹사업자는 매출의 투명성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정기지급금(로열티)에 대한 상호 간 신뢰를 위해 매출의 입출금 등의 세무관리는 가맹본부에서 정하는 세무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2개월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서 제출)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남은 계

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에게 입주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 하한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		구 분
		상한	하한	
1	-	-	-	-

- 2023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2023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2023년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일반상담/ 치료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구두경고 또는 서면경고 2차: 1차서면 시정조치 3차: 서비스 공급 중단 4차: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			
부부상담			
종합검사			
집중력검사			
해석상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 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물품	제한된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금지	1차: 구두경고 또는 서면경고 2차: 1차서면 시정조치 3차: 서비스 공급 중단 4차: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가맹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2021년 12월 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① 특별시, 광역시, 시인 경우 [구]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구] 단위, 나머지는 [시] 또는 [군] 단위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인정한다. ② 영업지역을 귀하와 협의하여 그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서 별첨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는다.	1. 행정구역 기준 2.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케어마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	-

[당사는 2023년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어, 직영점만 운영하였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

[당사는 2023년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고, 온라인 상품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 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케어마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사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로열티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본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3조 3항)

- 귀하가 가맹계약서 21조(물품 및 서비스 품목 공급의 중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귀하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광고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대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매체포함)에 의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였을 경우
-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의 지역 내에서 개별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광고대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3자(매체포함)에게 광고를 위임할 경우
- 귀하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당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귀하의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를 제작했거나 당사의 콘텐츠(이미지 포함)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당사가 정하는 물류 및 서비스 공급 중단 사유]

즉시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21조 2항)

- “을” 이 파산한 경우
- “을” 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 “을” 이 강제집행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물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갑” 의 서면동의 없이 “을” 과 계약된 이외의 지역에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을” 이 제33조 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시정 시 서비스 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21조 1항)

- “을” 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채납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된 경우
-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을'이 자금결산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을 위해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갑'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종업을 하는 제3자와 업무협력 관계인 경우
- '을'이 로열티, 광고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서 한도액 80%를 초과한 경우
- '을'이 총매출액과 세부 지출 내역 보고 의무를 3회 이상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을'이 '갑'의 상품관리 지시내용을 1년(12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을'이 노후 된 센터설비의 교체 · 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을'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상품 및 코칭 상담 과정을 변경 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 및 코칭상담과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 하거나 타 센터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매뉴얼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당사 관리자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센터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을'이 직원관리를 소홀하여 노사관계의 시비가 발생되거나, 직원과 소송 등의 절차로 인해 '갑'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갑'이 내용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을'이 '갑'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센터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갑'이 요청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 '을'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갑'이 '을'의 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 '갑' 또는 '을'이 상담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법률적 문제(소송, 기타 행정처분) 또는 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브랜드를 실추하거나 센터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분명한 영업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가맹본부 또는 케어마인에 속한 가맹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③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3조 4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협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구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 변경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갱신계약시 변경된 계약서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 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당사 담당팀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거절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 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거절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가맹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환매	불가능	-	

- 양도양수시 가맹계약외 기타 부동산 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 단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귀하가 케어마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 수	비 고
10:00 ~ 19:00	주 6일, 월 25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비 고
정규직 1명 이상	직접 근무	165㎡ (약50평) 기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센터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 → 관리내역 점검 → 상담일지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 → 완료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사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케어마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총비용을 균등하게 부담 (가맹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기획 → 가맹점사업자 분담금 산정/통지서 발송(전월1~말일 내역을 익월 2일까지 발송) → 광고비 입금 (익월 5일이내)	-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공동판촉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총 비용을 균분하여 부담		판촉기획 → 가맹점사업자 분담금 산정/통지서 발송(전월1~말일 내역을 익월 2일까지 발송) → 광고비 입금 (익월 5일이내)	
	할인카드. 멤버쉽 제휴서비스	(해당없음) → 협의 후 부담			

- 위 사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 하거나 케어마인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28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를 제작 하였거나 또는 제작중에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당사의 콘텐츠(이미지 포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되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일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사업자가 당사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광고운영을 위탁하거나 또는 당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당사의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며 가맹사업자는 당사에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오십만원(₩5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7)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165㎡ (약50평) 기준 당사 전체 시공시	약 50일 내외	IV.가맹사업자의 부담. 4)번 항목 참조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지역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55~69(14일)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55(1일)	
상권분석 및 임대차 계약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D-42~55(14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공사비 산출 - 시공계약 체결	D-35~41(7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공사 - 간판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직원 채용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 완료)	D-7~34(28일)	
개점준비 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 센터 업무 모니터링	D-1~6(6일)	
개 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적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가맹본부 요청이 아닌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결정으로 시행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 점포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 점포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가맹본부 요청이 아닌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결정으로 시행되는 비용은 제외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프로그램 운용, 서비스 OJT, 자금결산, 사례교육, 인사근무관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7일전	필 수
개점 후 교육	서비스 보수교육 가맹점 관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수 시

- 위 사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 고
개점 전 교육	3~7 일	7,700	가맹점사업자 1인 데스크 업무담당자 1인	정직원 채용시 추가교육 진행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비용 없음 (예외 있음)	추후 공지	협의 후 부담 방법 결정

- 위 사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케어마인심리상담&코칭센터 합정역점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몰 208호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822일	현재 운영중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점포개설 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 (주)케어마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_____지역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별지 2. (주) 케어마인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확 인 서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사전수령)

본인은 (주)케어마인으로 부터 [케어마인 심리상담&코칭센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와 인근 매장 정보를 가맹사업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준수에 따라 가맹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전 수령 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만일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 수령일	20 년 월 일	가맹계약서 수령장소	
정보공개서 수령일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수령장소	
가맹계약 체결일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자문일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자문인	

20 년 월 일

확인자 _____ (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